
2017년도 윤리감사 보고서

2018년 02월 28일



감 사 실

목 차

I. 윤리감사 개요	1
① 감사실시 근거	1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1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1
II. 항목별 추진실적	2
① 윤리행동강령(제13조)	2
② 임직원의 재산등록(제14조)	6
③ 임직원의 취업제한(제15조)	7
④ 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제16조)	9
⑤ 영리 업무의 금지(제17조)	12
⑥ 협력업체의 행위제한(제18조)	14
III. 2018년도 윤리감사 계획	16
붙임 : 2017년도 자체감사 실적	18

① 감사실시 근거

- (법률 제12932호 2014.12.3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 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 시행 2015.07.01)
- 공공기관 감사 : 윤리감사 시행 후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②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내용

- 「원전감독법」 제19조(윤리감사)에 따라 감사는 제13조-제18조의 임직원·협력업체의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정기/수시 감사 보고
- 윤리감사 대상 및 주요 내용

대 상	준 수 내 용
윤리행동강령 (제13조)	▸ 윤리행동강령의 제정 및 공개, 준수 여부
임직원의 재산등록 (제14조)	▸ 2직급이상 직원의 재산등록 이행 여부
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5조)	▸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기관 취업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위반 여부
부당한 정보제공· 이용 금지(제16조)	▸ 사적이익 추구 및 특혜 목적의 정보제공 금지· 이용 위반 여부
영리 업무의 금지 (제17조)	▸ 직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 종사금지 위반 여부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제1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뇌물 등 공여, 부당한 원전 정보 취득 및 이용, 품질문서 위·변조 등) 위반 여부 및 후속조치(등록취소/입찰제한) 적정성

③ 윤리감사 보고의무

- 윤리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윤리행동강령(제13조)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감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에 의거, 원자력발전공공인 한국전력기술은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 및 공개 의무화

「원감법」 제13조(윤리행동강령)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 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명시

나.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5조)차별대우 금지 (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6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6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6조의4)재직중 취업 청탁 제한 (6조의5) 외부고객 방문시 청탁물품 사전차단 조치 (7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4조)퇴직자의 취업 제한 등 (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7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1조)협력업체 대상 윤리 행동기준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2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23조)투명한 회계 처리 (24조)정보의 유출 금지 (2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제5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2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7조)금전의 차용금지 (28조)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 (29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30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31조)성범죄 행위 금지 (31조의2) 음주운전 금지
제6장 위반시의 조치	(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3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34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심의회 (35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다.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개정 이력

- 2013.06.28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 2017.04.27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9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의 취업 제한' 조항 보완·개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주임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간 변경 :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퇴직일(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재산등록의무면제일)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 - 취업제한 협력업체 조정 :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전체 협력업체'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협력업체'로 조정 	제14조

- 2017.08.01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0차 개정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행동강령책임자 명칭 개정
- 2017.09.06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11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외부고객과의 청렴윤리 실천방안 규정화 및 청렴윤리 특별강조기간 시행근거 마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고객 방문시 청탁물품 사전차단 조치 : 외부고객이 청탁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출입관리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반입 차단조치 - 성범죄 행위 일체금지 - 음주운전 금지 조항 신설 : 위반 직원의 위반사실 즉시 신고 및 감사업무부서의 필요 조치 의무화 - 청렴윤리 특별강조기간 시행 : 매년 9월 29일을 전후한 시기에 청렴윤리 특별강조기간을 정하여 청렴교육, 기념행사 및 캠페인 등 실시 	제6조의5 제31조 제31조의2 제40조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공개 :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공개

라.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 '17년 총 12회 시행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기간	조치내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2017.02.27	▶ 위반사항 없음
		2017.06.12 ~ 06.16	
외부강의 신고현황	외부강의 시간 및 대가 초과	2017.07.11 ~ 07.19	▶ 위반사항 없음
공직기강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위반 등	2017.02.27 ~ 03.17	▶ 위반사항 없음
		2017.04.17 ~ 05.08	
		2017.06.27 ~ 07.05	
		2017.07.24 ~ 08.04	
		2017.08.21 ~ 08.24	
		2017.09.06 ~ 10.09	
		2017.12.26 ~ 12.29	
행동강령 특정 위반사항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2017.05.29 ~ 09.29	▶ 징계 1건
	음주운전 금지 위반	2017.11.10 ~ 11.13	▶ 징계 2건

* 행동강령 특정 위반사항 중 금품·향응수수 금지 위반 징계 1건은 원자력사업이 아닌 화력 EPC사업임

② 임직원의 재산등록(제14조)

가. 관련법령

- 「원감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에 의거하여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재산등록 대상

「원감법」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련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재산등록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을 준용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등에 임직원 재산등록 규정화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 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 임원 → 2직급 이상으로 확대(2014.07.01)

나. 2017년도 재산등록 시행 현황

- 2017년 공기업 전환으로 기관장, 상임감사 재산공개대상자 지정되어 재산신고 및 재산내역 공개(2017년 하반기)
- 2017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대상자 중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심사결과 2명 과태료 부과, 5명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3 임직원의 취업제한(제15조)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에 의거하여 재산등록 대상인 한국전력기술 2직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후 업무관련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준용)

「원감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른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적격심사시 2직급이상 퇴직자 영입확인서 의무장구 여부
- 취업제한 담당부서의 취업제한 관련 교육 및 안내 실시여부 점검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적격심사시 2직급이상 퇴직자 영입확인서 의무장구 : 없음
 - 2017년 신규 협력업체 모집이 없어 취업제한 협력업체 위반 없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심사 결과 : 위반사항 없음

□ 퇴직예정자 취업제한제도 교육 실시(총 4회)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2017.06.15	2017년도 상반기 퇴직예정자	공직자윤리법 관련 퇴직자취업제한제도 주요내용 및 취업심사절차 안내
2017.11.07	정년퇴직 2년전 예정자	
2017.11.15	2017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	
2017.12.14	2018년도 정년퇴직예정자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총 3회)

- 2017.03.17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주요 내용 사내 행정게시 및 안내
- 2017.03.25 : 한기 동우회(퇴직자 모임) 회보에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게재
- 2017.12.21 : 정년퇴직자 대상 퇴직자 취업제한 종합 가이드라인 행정게시 및 안내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개정

- 2015.06.08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 2017.04.27 :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2차 개정

개 정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및 주임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간 변경 :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퇴직일(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재산등록의무면제일)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 - 취업제한 협력업체 조정 :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전체 협력업체'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협력업체'로 조정 - 인사혁신처 고시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반영 	<p>임직원 윤리행동 강령 개정 반영</p>

4 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제16조)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에 의거, 원자력발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

「원감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전력기술 「취업규칙」,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임직원이 회사의 기밀누설, 직무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취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24조(정보의 유출 금지)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 제15조(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① 직원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주요 감사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점검(연중)
- 정보관리 취약요소 지속점검(상시감사 모니터링/자체 감찰 : 수시)
 - 점검내용 : 문서보안, 정보보안 등 보안관리 실태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부당한 정보제공이용에 관한 내·외부 제보 및 신고사항

○ 원감법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이용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 접수 건 : 없음

□ 정보관리 점검사항

점검명칭	점검기간	점 검 내 용	조 치
내 부 보안감사	2017.04.27 ~ 2017.06.16	기술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직원들의 생활 보안 준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취약항목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 징구 및 조치 여부 확인
	2017.11.02 ~ 2017.11.30		
협력업체 보안감사	2017.03.20 ~ 2017.03.24	협력업체를 통한 설계문서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 보안활동 및 인식수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활 보안 수준 점검 강화 및 내외부 직원에 대한 보안 각서 징구 유도
	2017.05.25 ~ 2017.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계정 활성화 등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이 미흡해, 관련 조치 방안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
	2017.08.22 ~ 2017.0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문서중앙화시스템은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보완
	2017.11.22 ~ 2017.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망분리, ISO27001 인증 취득 업체 등 보안 수준이 높은 협력업체 사례 공유

□ 회사 중요자료 접근 통제, 보안 강화 조치 실시

- 원자로 계통설계 전산화 시스템 적용·운영
- 도면 및 설계문서 관리시스템 적용·운영
-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적용·운영
- 사이버보안관제실을 통한 자체 보안 관제 실시(2017.01 ~ 현재)
- 대외기관 보안감사 수검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산업부 일반보안 감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등)

- 내부 보안감사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연 2회)
- 불시 보안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연 8회)
- 협력업체 보안감사 실시 : 분기별 1회(연 4회)
- 기술자료 이용 이력 관제 시스템 운영
 - 특이접속자 검출 후 사업PM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 재직자 1,635 건 및 퇴직예정자 263건 통보 및 검토
(검토결과 이상 없음)

5 영리 업무의 금지(제17조)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징계하도록 명시

「원감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제2호 및 제3호 생략 ...)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해당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해당 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기술 「정관」, 「취업규칙」 및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등에 영리업무 금지사항을 규정화

「취업규칙」 제9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행위(휴직 중 포함)

「취업규칙」 제13조(회사업무에 종사)

직원이 취업기간 중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임직원의 영리행위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 다양한 탐지채널을 활성화하여 운영
 - 회사 신고시스템(신문고/레드휘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 인사담당부서의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관련 업무 수행현황 및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 여부 등 점검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특별감사 실시
 - 원감법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관련 내·외부 제보/신고접수 건 : 1건
 - 본인의 부동산 개발(건물 신축)을 위해 파견근로자 직원에게 사적으로 업무지시
 - 감사부서에서 징계양정 '해임' 처분 요구 → 인사위원회 개최 후 '정직 6월' 처분
- 분기 별 전직원 대상 회사업무 외 종사 승인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 안내 발송 실시(매분기 초일에 자동 발송)
- 회사업무 외 종사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사전 협조 승인(19건)
 - 2017년 회사업무 외 종사

회사업무 외 종사 분류	2017년 승인 건수
대학 출강 승인(인사처 승인일 기준)	5건
외부위원 위촉 승인(인사처 승인일 기준)	14건

6 협력업체의 행위제한(제18조)

가. 관련법령 및 사규

- 「원감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에 협력업체의 뇌물공여 등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행위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 조치

「원감법」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① 협력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4.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행동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13.06.28)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4조(금품·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한전기술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한전기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요 감사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
 검찰기소 및 내·외부 제보나 신고 등을 활성화
- 협력업체 등록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여부
- 협력업체 청렴윤리 실태조사

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건수 : 없음
- 협력업체 등록시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징구 : 없음(신규모집 없음)
- 기 등록된 협력업체에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개정 및 안내(‘17.4)
- 등록심사 109개 협력업체 실지조사(‘17.6 ~ ’17.7)
 - 등록심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 유무 조사
 - 협력업체 방문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임직원에게 금품수수/
 향응/편의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협력업체 현장방문 간담회(‘17.5 ~ ’17.7)
 - 최근 3개년(2014-2016년) 실적보유 협력업체 대상 현장방문 간담회 시행
 - 협력업체 27개사를 방문하여 업무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상생협력 도모 및 청렴도 제고

1 2018년도 윤리감사 추진방향

- 청렴도/부패방지시책/감사원 평가 등급제고 추진
 - 대내 및 대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 부패방지시책 과제 100% 이행을 위한 체계적 지표 관리 강화
 - 감사원 평가 항목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 반부패체계 고도화
 -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선도
 - 지방이전/전력그룹간 청렴 및 반부패 업무 협력활동 강화
- 사내 청렴윤리 계획 및 운영시스템 정립방안 추진
 - 청렴윤리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시스템 정립을 통한 업무분장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풀뿌리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전면 개편 권고
- 감사인력 전문역량 강화
 - 국제내부감사사(CIA)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감사역량 제고
 - 취약분야 및 리스크 기반 감사제도 개선
 - 체계적인 감사교육 실시(감사원/청렴연수원 중심)
- 내부통제 기능 활성화
 - e-감사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지속적 기능 보강
 -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 기능 강화

② 2018년도 주요 감사계획

□ 종합감사 및 수시 특정감사 등을 통한 윤리감사 사항 점검

구 분	감 사 내 용	시 기
종합감사	국내·외 현장, 지사 실지감사	2018.06/2018.12
재무감사	2017년도 결산감사	2018.02 - 03
특정감사	차량 운영실태 감사	2018.01 - 02
	사옥 관리실태 감사	2018.04 - 05
	인천복합 5,6 RAC ESCO 사업	2018.07 - 08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EPC사업	2018.09 - 11
복무감사	근무실태 점검	년 중
	복무기강 점검	년 중
	시설 및 보안 점검	년 중
일상감사	각 본부/단 일상감사	년 중

※ 상기 감사일정/항목은 긴급사항 발생 및 대외감사 수감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지감사(종합/재무/특정/성과/복무) : 총 26개 부문 감사 시행

(계획/실적 구분단위 : 건)

구분	감사종류	계획	실적	처분요구실적									신분상 조치 인원(명)			재무상 조치 금액 (천원)
				전체	징계	변상	사정	개선	권고	경고 주의	통보	고발	징계	고발	경고 주의	
내부감사	종합감사	3	3	23	-	-	2	-	18	1	2	-	-	-	2	-
	재무감사	1	2	5	-	-	-	-	-	-	-	-	-	-	-	-
	특정감사	11	13	73	13	-	13	5	31	10	-	1	15	1	26	3,732,233
	복무감사	3	8	-	-	-	-	-	-	-	-	-	-	-	-	-
	성과감사	1	-	-	-	-	-	-	-	-	-	-	-	-	-	-
	합계	19	26	101	13	-	15	5	54	11	2	1	15	1	28	3,732,233
	일상감사	-	1,850	108	-	-	-	8	100	-	-	-	-	-	-	-
외부감사	감사원	-	2	3	-	-	-	-	-	2	1	-	-	-	5	-
	주무부처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합계	-	2	3	-	-	-	-	-	2	1	-	-	-	5	-